

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

의안번호	251
------	-----

제출일자 : 1994. 9. 16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提案理由

-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내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투자재원의 부족으로 동사 신축비 일부를 지방재정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, 사업 시행코자 함.

2. 主要内容

- 고정3동사 신축비 기채 : 200백만원(청사정비기금)

地方債發行計劃同意案

1. 근 거 :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

2. 대상사업 : 과정3동사 신축

3. 발행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발 행 금 액	차 입 선	발 행 조 건	차 입 시 기	상 황 재 원
200	지방재정공제회 (청사정비기금)	연리 3% 2년거치 10년 균분 상환	'94. 12	지 방 비 (구 비)

4. 사업계획

○ 사업목적 : 구 보건소청사 위치에 동사 신축하여 주민편의 및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

○ 사업개요 및 재원확보 상황

(단위 : 백만원)

공 종 별	사 업 개 요	사 업 비		
		계	지 방 비 (구 비)	지 방 채
계		1,081	881	200
보 상 비	건물 6동	56	56	—
공 사 비	지하1층, 지상3층 (대지 1,216㎡)	998	798	200
부 대 비	설계비 등	27	27	—